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
소송종류	행정소송	법 원 명	대법원
사건번호	2020두○○○○○ [3심]	사건유형	기타
원 고	○○○	피 고	인천광역시교육감
판결선고일	[3심]2021. 1. 14. 심리불속행기각	비 고	[1심]2020. 2. 20. 원고일부승(일부승소) [2심]2020. 9. 11. 항소기각(패소) [3심]2021. 1. 14. 심리불속행기각(패소) ※ 최종 교육감 일부승
사건개요	❍ 원고는 ○○○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로서, 2017년 6월경 교육청 감사관실로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조사 결과, 원고가 수업시간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7. 7. 21. 학교법인에 원고에 대한 경고처분을 요구하였음. 원고는 2018. 9. 7. 피고에게 **2017년 본인 감사관련 조사 자료 및 내부결재자료(진정인 감사요청서, 학생면담 내용, 조사 결과 보고서)의 정보공개를 청구**하였고, 피고는 2018. 9. 18.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**정보공개거부처분**을 함. ❍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, 2018. 10. 15.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9. 3. 12.자로 '기각' 결정을 받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소를 제기함.		
주 문	1. 상고를 기각한다. 2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		
이 유	❍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,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		
2심 판결요약	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 - 조사결과보고서에는 **감사관의 세부적인 판단 과정 등에 대한 기재 없이 원고에 대하여 경고 조치가 요구된다는 정도의 의견만 기재**되어 있고, 원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경고조치가 나오게 된 조사내용을 알권리가 있고 이러한 **알권리가 조사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감사 업무 수행의 공정성보다 더 크다고 보임**. ❍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음 - 조사결과보고서 중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경우 어떤 학생이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, 설문조사에서 누가 무슨 내용으로 답변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며, 졸업생 중 한 명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는 원고의 추측에 의한 것인 뿐으로 조사결과보고서 중 그 학생이 특정되어 기재된 바 없음.		
2심 결론	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		